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춘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2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7.

발의자 : 최춘식 · 김희곤 · 배준영
조명희 · 김성원 · 하영제
김용판 · 박대수 · 구자근
강기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.

즉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생산관리지역(농업 · 임업 ·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)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·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장에서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,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(신축 · 증축 · 개축)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

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축을”을 “건축,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3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특례) ① 농촌용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 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.</u>	제8조의3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축,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</u> -----.
1. ~ 3. (생략) ②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